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오현정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53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05월 25일
발 의 자 : 오현정, 김제리, 이정인,
김광수, 송도호, 조상호,
김인호, 박순규, 김화숙,
양민규, 이병도, 홍성룡,
김상훈, 이동현, 김경영,
최웅식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-19의 지역사회 확산과 신종·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감염병의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감염병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정부 및 교육청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협력 및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감염병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
- 또한 서울시민의 안전 보장과 감염병 대응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,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및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를 신설하여 서울시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병원체 수집·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규정을 신설함.
(안 제3조제1항제7호)
- 나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신설함. (안 제3조제1항제9호)
- 다. 기후변화, 저출산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·연구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마련함. (안 제3조제1항제12호)
- 라. 시장은 서울시 교육청과 감염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. (안 제3조제3항)
- 마. 시장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. (안 제3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방역 대책”을 “방역대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감염병환자 등”을 “감염병환자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수집·분석”을 “수집·분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조사·연구”를 “조사·연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제14호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를 제1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,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8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전문 인력”을 “전문인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(중전의 제9호) 중 “감염병예방”을 “감염병 예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7호(중전의 제11호) 중 “정보수집”을 “정보 수집”으로, “발간(매뉴얼을 포함한다)”을 “발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한다) 고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3호,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감염병병원체(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,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) 수집·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
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11.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
12. 기후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·연

구 및 예방대책 수립
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
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

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9.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
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
10. 해외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
에 대비한 준비, 교육과 훈련

<신 설>

11.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
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수집,
특성 분석, 연구를 통한 예방
과 대응체계 마련, 보고서 발
간(매뉴얼을 포함한다)

12. 그 밖에 감염병 예방·확산
방지에 필요한 사업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
위한 국제협력

14. 감염병 예방 -----
--

<삭 제>

11.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

17. -----
----- 정보 수집-----

----- 발
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하
다) 고시

12. 기후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
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
발생조사·연구 및 예방대책
수립
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
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
에 대한 지원

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
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
및 훈련

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
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
의 지정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